

# 송실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정관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본회는 사단법인 송실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(KSCU총동문회)라 칭한다.

**제2조(소재지)**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3조(목적)** 본회는 송실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회원으로서 동문회원간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학문과 전통을 계승, 발전시키며 회원 간의 교류와 장학활동을 통한 후배 양성 및 학교발전기금 마련 등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회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(사업)**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
2. 장학 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
3.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
4. 학술 연구회
5. 후생 사업 및 경조위문
6. 기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

**제5조(수익사업)**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활성화와 수반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이익의 제공)**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
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.

## 제2장 회원

**제7조(회원의 구분)**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으로 한다.

**제8조(회원의 자격)**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. 단, 명예졸업자도 정회원으로 간주한다.
2. 준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.
3.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.

4.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임교수 및 직원으로 한다.

### 제9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1.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의무를 진다.

2. 준회원은 회비 납부와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의무를 진다.

3. 총회 및 이사회 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4.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를 하여야 한다.

5. 본회의 회원은 총동문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총동문회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(장학금 수여 및 졸업 공로패 수상 등은 준회원 이상인 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.)

6.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. 단 선거 공고일 1개월 이전에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 한다.

7.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

제10조(회원의 탈퇴)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원의 상벌)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## 제3장 임원

제12조(임원의 종류와 구성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: 1인

2. 부회장 : 5~10인 이내(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자를 수석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)

3. 감사 : 2인

4. 상임이사 : 각 학과 동문회장, 지역동문회장 및 역대 총학생회장(부회장) 중에서 선임하되 이사회와 협의하여 구성 한다.

5. 이사 : 회장이 운영진과 협의하여 구성한다.

6. 사무총장 : 1인(당연직 이사로 회무를 집행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 한다.)

7. 집행부 임원: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본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

8. 고문 : 역대 동총문회장중 이사회에서 추대 한다.

9. 자문위원 : 모교 교수 중에서 약간 명을 위촉한다.

10. 명예회장 : 모교의 현직 총장과 직전 총동문회장을 본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임기) ① 본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단 중임의 경우 이사회 1/3 이상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.

2. 어느 한 후보가 과반수 이상 추천을 받을 시 선거를 생략 할 수 있다.

3. 임원의 권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며,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회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.

**제14조(임원의 선임)**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.

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대해서 회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부 할 수 없다.

③ 선임회장은 차기 이사회 개최 시까지 전기의 감사를 유임한다.

④ 회장의 결격사유가 발생 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불신임 할 수 있다.

⑤ 회장과 감사 출마 자격은 공고일 1개월 이전에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하며, 숭실사이버대학교 졸업자로 한다.

⑥ 회장 및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⑦ 새로운 회장 및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⑧ 부회장과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, 회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해임 할 수 있다.

⑨ 이사 및 감사는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회비 결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회비 미납 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제적 할 수 있다. (불참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서면 통보 또는 홈페이지에 사유를 제출 한다.)

⑩ 불참 시 위임장을 제출하고 찬조(참가비 이상)를 할 경우 행사 참석으로 인정 한다.

**제15조(회장 유고시)** ①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,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잔여 임기의 회장을 선출 한다.

②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 임기의 회장 업무를 수행 한다.

**제16조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**제17조(임원의 선임 제한)**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**제18조(임원의 직무)**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상임이사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상임이사는 각 학과 및 지역을 대표하며, 각 학과 및 지역의 동문회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 한다.

④ 이사는 본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지원하며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이를 결정 한다.

⑤ 집행부 임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주관하고 준비하며, 이사 및 상임이사의 지위를 갖는다.

⑥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장 및 운영진에게 조언 할 수 있다.

⑦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회의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## 제4장 기구 및 사무처

**제19조(기구의 구분)**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.

1. 총회
2. 이사회
3. 집행운영위원회

**제20조(기구의 구성)**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총회 :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.
2. 이사회 :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상임이사, 이사 및 집행운영위 임원으로서 구성한다.
3. 집행운영위원회 : 회장, 부회장, 감사, 상임이사 및 집행부 임원으로서 구성한다.

## 제5장 총회

**제21조(총회의 구성)**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22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**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.

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 회장 또는 이사회 4분의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.

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총동문회 온라인 매체로 공지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총회의 기능)**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2. 정관개정에 대한 승인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**제24조(총회소집의 특례)**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8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감사의 사회아래 그 임시의장을 선출한다.

**제25조(의결정족수)** ① 총회는 이사회의 3분의 1이상의 인원수가 출석하면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**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# 제6장 이사회

**제27조(이사회 구성)**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상임이사, 이사 및 집행운영위 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28조(구분 및 소집)**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회장이 소집하되 소집 7일 전에 온라인 매체로 공지한다.

③ 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각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1. 회장이 소집의 필요성을 가질 때
2.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3.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

**제29조(의결정족수)** ① 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단,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 한다.)

②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.

**제30조(온라인결의)**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온라인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31조(이사회 의결사항)**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2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의 운영 및 승인에 관한 사항
4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 제7장 집행운영위원회

**제32조(집행운영위원회)** ① 집행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활동 및 행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한 발의 및 협의와 결정을 한다.

② 집행운영위원회는 각 총동문회 및 학과동문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한 발의 및 협의를 수행 한다.

## 제8장 재산 및 회계

**제33조(재산의 구분)**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임원 분담금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별지와 같음.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### 제34조(재산)

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.

1.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, 평생회비
2. 회장 및 임원의 기여금
3. 찬조금 및 기부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장학금 기타 특수목적을 위한 찬조금은 별도 경리 할 수 있다.

② 회비 및 기여금은 다음과 같다.

1. 신, 편입생 및 재학생 : 입회비 30,000원
2.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: 연회비 30,000원

3. 평생회비 300,000원 : 1회 납부로 연회비 면제

4. 임원 연회비<삭제> 최저 기여금은 다음과 같으며 이사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다.

직책	기여금	직책	기여금
회장	200만원		
수석부회장	50만원	부회장	40만원
상임이사	30만원	이사/감사	30만원
고문	30만원	사무총장	20만원
사무국장	10만원	집행임원	10만원
명예회장	20만원	자문위원	10만원

③ 각종 회비 및 기여금, 찬조금, 기부금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을 공지 한다.

④ 본 회의 재원에 관한 모든 수입은 본회가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 및 지출해야 한다.

⑤ 모든 회비의 수납 내역은 즉시 공지하여 투명성을 높인다.

**제35조(재산의 처분 및 관리)**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제48조의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② 본회가 매수, 기부채납 및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차입금)**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37조(회계연도)

1.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2.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.

**제38조(예산편성)** 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**제39조(결산)**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40조(임원의 보수)** 본회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9장 사무부서

**제41조(사무국)**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.

② 사무총국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국장 등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.

-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한자를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총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## 제10장 징계 및 상벌

**제42조(제명 및 징계)**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회원의 권리를 박탈, 제명 시킬 수 있다.

**제43조(공로 및 감사패)**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명예를 높인 회원을 선정하여 회장 명의로 공로 및 감사패를 줄 수 있다.

## 제11장 보 칙

**제44조(정관변경)**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총회에서 의결하여 관계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정관 개정은 회장, 총회,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발의가 있을 경우 그 안건을 수렴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상정하고 총회에서 의결 한다.
2. 정관의 제,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회의 성원이 불가능할 경우 이사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하고 의결 할 수 있다. 단, 이사회에서도 불가능 할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 한다.
3. 정관 개정 건의를 접수한 경우 15일 이내에 발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.
4. 정관 개정은 재적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**제45조(업무보고)** ①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계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관계부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6조(규칙제정)**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